

의안번호	2219235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6. 7. 6.
추 계 번호	26A288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의2 신설 (과징금)	○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31조의2 신설 (신고포상금)	○ 매점매석 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의2 신설 (과징금)	—	• 미대상: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 개정안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재정수입의 증가에 해당하므로,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2	안 제31조의2 신설 (신고포상금)	×	• 미첨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1)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 매점매석 행위란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의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석유제품, 주사기 및 주사침,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관한 행위를 말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 다만, 현 시점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건수와 개정안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분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포상 대상자 규모와 지급되는 포상금 수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653	choi1009@assembly.go.kr